ESG 규정

㈜유씨케이파트너스

UCK Partners

ESG 규정

제정 2016 년 1 월 27 일
개정 2023 년 3 월 10 일
개정 2026 년 7 월 8 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별첨 1]로 첨부된 ESG 정책(ESG Policy)에 따라 ㈜유씨케이파트너스(이하 "**회사**")의 ESG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ESG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을 정한 UCK Partners 의 ESG 위원회 규정(2026 년 5 월 21 일 시행)과 상호보완적으로 해석·적용한다.

제 2 조 (ESG 위원회)

① **구성**: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 년 5 월 21 일 시행된 회사의 ESG 위원회 규정(향후 개정사항 포함, 이하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회사의 준법감시인
- 위원: (a) 이사회가 지정하는 이사, (b) 준법감시인, (c) 펀드관리팀장, (d) 경영관리팀 및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그 밖의 자
- 사안별 비의결 참석자: 특정 펀드, 포트폴리오 회사, 투자거래 또는 ESG 전문 영역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아래 인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비의결 참석자는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a) 해당 사안 담당 투자 프로젝트팀 구성원
  - (b) ESG 컨설턴트, 산업 전문가, 환경 엔지니어, 법률자문사 등 건별 또는 연간 자문계약에 따라 수임된 분야별 외부 전문가

② **직무대행**: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대행자를 지정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 선임일이 빠른 순, 선임일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집 및 개최**: 위원회는 분기별 1 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i)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ii) 위원이 안건을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iii) 투자 또는 펀드관리 부서가 안건을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iv)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ESG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 (v)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의결방식 및 이해상충**: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특정 안건에 중대한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사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제 3 조 (역할 및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ESG 정책 추진 및 관리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투자 후보 대상을 선별하는 단계에서 [별첨 2]의 체크리스트에 기반하여 사전실사(pre-due diligence)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사전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사항은 투자 프로젝트팀에 신속히 보고하고, 본격적인 실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ESG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③ 위원회는 ESG 사전실사 및 ESG 실사(별첨 3 참조)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이 투자심의위원회에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확인한다. 또한 투자 후 포트폴리오 회사의 보유 기간 동안, 식별된 ESG 이슈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투자 프로젝트팀을 통하거나 포트폴리오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연 1 회 이상 점검한다.

④ 위원회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ESG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팀 및 투자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보고·제안한다. 포트폴리오 회사에 중대한 ESG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최소 7 년간 보관·관리한다.

- (i) ESG 사전실사 체크리스트(별첨 2)
- (ii) ESG 실사보고서(별첨 3)
- (iii) 분기별 ESG Team 회의 의사록
- (iv) 포트폴리오회사 KPI 추적표
- (v) 보고용 연간 ESG 성과 요약

⑥ 위원회는 회사가 가입했거나 준수하는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UN PRI 등)의 도입 및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⑦ 위원회는 지역사회 참여, 사회공헌활동, 다양성(DEI) 강화를 포함한 회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전략, 계획 및 성과를 심의한다.

⑧ 위원회는 LP(유한책임사원), 감독기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ESG 관련 보고물(ILPA DDQ 답변, UN PRI 연례보고서, 회사의 연례 ESG 보고서 등)을 검토 및 승인한다.

⑨ 위원회는 회사 및 그 포트폴리오회사의 ESG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감독하고, 투자팀에 적절한 리스크 완화 조치를 권고한다.

제 4 조 (교육 및 모니터링)

① **임직원 교육**: 위원회는 책임투자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 및 회사가 서명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임직원 대상 ESG 교육·훈련 프로그램 체계를 운영한다.

② **개선 모니터링**: 위원회는 포트폴리오 회사 내에서 ESG 개선 이니셔티브가 실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 5 조 (결과 보고)

위원회는 각 LP 와 체결한 관련 사이드레터(Side Letter) 또는 정관(LPA)에서 정한 형식·범위· 주기에 따라, 혹은 ESG 정책에 명시된 바에 따라 ESG 활동 및 점검 결과를 LP 에게 보고한다. 모든 위원회 회의록은 작성 후 최소 7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 1 조 본 규정은 위원회의 결의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2 조 본 규정은 2026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ESG 정책 (ESG Policy)

1. 기본 원칙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 기준 및 산업 프레임워크는 투자 시장에서 널리 적용되는 벤치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본 ESG 정책은 UCK Partners 및 당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회사에 대해 환경·사회적 법규 준수, 사회적 기여, 위험관리 및 가치창출에 대한 LP 등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이행은 ESG 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립된 ESG 위원회가 총괄 감독합니다.

UCK Partners 는 본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포트폴리오 회사의 투자활동과 연관된 범주 내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기관투자자를 위한 OECD 책임있는 기업행동 지침, ILO 노동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책임투자 프레임워크를 반영합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 관련 구체적 프레임워크는 세부 항목에서 다룹니다.

2. 정책 목적

UCK Partners 의 기업 철학은 '사람과의 조화 속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본 ESG 정책을 통해 피투자회사, 투자자,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도모하며, 법률·규제·평판·운영 위험을 관리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및 회수(Exit)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통합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적용범위

본 정책은 UCK Partners 및 당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모든 피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정책 도입 이전에 투자한 기존 피투자회사의 경우, UCK Partners 가 과반주주로 있는 경우 본 정책의 준수 사항을 적용합니다.

4. ESG 접근방식

가. ESG 주요 고려 요인

사업 운영에 있어 아래 요소를 포함한 ESG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며, 피투자회사 및 그 자회사는 소재국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 **환경(Environment)**: 대기·폐수·폐기물·토양 및 지하수 오염 규제 준수,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 **사회(Social)**: 반사회적 세력 차단, 합리적 보상체계, 건전한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임직원 교육·훈련, 근로조건 준수 및 괴롭힘 방지, 고객 안전·보호, 개인정보 보호,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강화, 지역사회 참여, 강제·아동 노동 금지를 포함한 인권 존중
-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법령 준수,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내부통제, 부패 방지 및 내부고발 제도의 운영, 이해상충(GP-LP-포트폴리오회사 간) 방지

특히 지배구조(G) 영역의 경우, UCK Partners 가 축적해 온 밸류업 노하우(Solution Space)를 바탕으로 사전 선별 및 실사 단계에서 취약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합니다.

나. 투자 단계별 이행 절차

(1) **사전 선별(Screening):** ESG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잠재적 투자대상에 대한 사전실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2) **실사(Due Diligence):**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선임하여 정밀 ESG 실사를 수행합니다.

(3) **투자 후 모니터링(Holding Period):**

- 포트폴리오 회사는 CSR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ESG 정책 수립 및 KPI 를 설정합니다.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포트폴리오 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에 보고하고 이사회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 실사 단계에서 식별된 이슈는 경영진 및 이사회와 협의하여 구체적 개선 계획(ESG Action Plan)을 수립하며, 위원회가 연 1 회 이상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4) **투자자 보고(LP Reporting):**

- 사이드레터 및 정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기/수시 보고를 수행합니다.
- 정기 펀드 보고서 포함, 주주총회(AGM) 발표, ILPA DDQ 질의응답 대응 등을 진행하며, UN PRI 연례보고서 작성 및 중대 사고 발생 시 빠른 수시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중대 사고 예시: 근로자 사망, 심각한 환경 오염, 임원 형사기소,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소송 등)

다. 핵심 프레임워크 통합

기후변화: IFRS S2(TCFD 기반) 기준을 참고하여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투자 심사 및 사후 관리에 적극 반영합니다.

자연 및 생물다양성: TNFD 및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자원, 토지 이용, 생태계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 투자의 경우 강화된 심사를 적용합니다.

인권: UNGPs 에 기반하여 공급망 전반의 인권 리스크(강제노동, 아동노동, 노동권 등)를 식별 및 관리합니다.

[별첨 2] ESG 체크리스트(사전실사 시)

ESG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실사 착수 전 단계에서, 투자팀이 공개된 정보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	부	해당없음	비고
1. 투자지침에 관한 사항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가 UCK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펀드 정관상 투자제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는 투자에 해당하는가?				
2. 반사회적 세력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대상회사가 과거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었거나 반사회적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가? 또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가?				
3. 환경 위험 - 대상회사가 15 년이상 가동하고 있는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가? - 임대 혹은 소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에서 화학물질을 제조공정에 사용했던 적이 있는가? - 대상회사는 환경 분야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발적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예:ISO 14001 등)을 취득하였는가? - 대상회사는 지난 5 년간 사고나 재해(홍수,지진,가뭄 등)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는가? - 대상회사는 지난 5 년간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지도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4. 기후 관련 위험 - 대상회사는 중대한 물리적 기후위험(예: 침수, 폭염 또는 가뭄 위험지역에 소재한 시설 등) 또는 전환위험(예: 고탄소배출 공정에 대한 의존 또는 탄소가격규제 대상 제품)에 노출되어 있는가? - 대상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및/또는 Scope 2)을 측정 또는 공개하고 있는가? - 대상회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거나 넷제로 내지 탄소중립을 공약한 바 있는가?				
5. 자연 및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 - 대상회사의 사업장은 보호구역 또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가? - 대상회사는 과도한 용수 사용, 수질오염 또는 토지전용의 위험이 있는가? - 대상회사의 업종 특성에 비추어, 자연자원 또는 생태계 서비스(담수, 원자재, 수분매개, 토양비옥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가?				
6.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위험 대상회사는 지난 5 년간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지도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7.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대상회사는 지난 5 년간 차별금지, 괴롭힘금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정명령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8. 인권 관련 위험** - 대상회사는 인권 침해 위험 노출도가 높은 업종 또는 지역(예: 노동집약적 제조업, 이주노동자 또는 도급노동자에 의존하는 사업장, 고위험 국가 소재 공급망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 대상회사는 지난 5 년간 인권, 노동권 또는 현대판노예제와 관련하여 규제상 제재, 소송 또는 중대한 평판훼손 사건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 대상회사는 고충처리제도 또는 내부고발 채널을 마련하고 있는가? **9.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대상회사는 지난 5 년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적용 가능한 해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과징금, 소송 또는 공개적으로 보도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10. 평판위험** 대상회사는 지난 5 년간 사회적 신용하락을 야기할 사건이나 소송 (예:노사문제, 제품리콜 등)의 발생 또는 사회적 비난(언론, NGO 등)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가? **11. 거버넌스 위험에 관한 사항** 대상회사 혹은 관계자가 뇌물, 배임, 횡령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지도 혹은 소송을 받은적이 있는지?				

[별첨 3] ESG 실사 항목 및 확인표

아래 ESG 실사 항목은 해당 투자대상회사 및 거래의 산업, 규모, 지분율 및 위험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며, 모든 투자에 아래에 열거된 모든 항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분	대분류	세부항목	검토 여부	Risk 여부	비고 (실사보고서 섹션) / 코멘트
E	1. Environmental risks	Environmental liabilities (환경오염 등 잠재 배상책임)			
		Approach to environmental impact (에너지·용수·오염물질 저감 노력)			
		Persons responsible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환경 책임자·ISO14001 등)			
		Business continuity plans (자연재해 대응 BCP)			
		Environmental permits and licenses (환경 인허가 취득·갱신)			
		Environmental accidents (환경사고 이력)			
		Capex (환경 관련 설비투자 필요성)			
	2. Climate-related risks	Governance (이사회 차원의 기후 이슈 관리)			
		Strategy (기후 위험·기회가 사업/재무에 미치는 영향 평가)			
		Risk management (기후 위험 식별·평가·관리 프로세스)			
		Metrics and targets (Scope 1·2 공개, Scope 3 측정 여부)			
	3. Nature-related risks	Dependencies and impacts (생태계서비스 의존도 및 영향 식별·관리)			
S	4. Legal risks relating t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ermits and licenses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Administrative guidance / Administrative sanctions (행정처분·지도 이력)			
		Occupational accidents (산업재해 이력)			
		Management systems (책임자 지정, 정기 위원회, 사고기록 관리)			
		Training and study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Capex (산업안전보건 관련 설비투자 필요성)			
	5. Human	Policy and commitment (인권정책·현대판노예제 성명 등)			

	Rights	Due diligence (인권 실사, 공급망 감사)			
		Grievance mechanisms (고충처리제도)			
	6. Data privacy and cybersecurity	Policies (개인정보보호정책·사이버보안 대응계획)			
		Certifications (ISMS-P, ISO/IEC 27001 등)			
		Past incidents (과거 개인정보 유출·규제조사 이력 및 시정조치)			
	7. Reputational risks	Mechanism for handling complaints (민원 접수·처리 체계)			
		Complaints/litigation relating to production facility operations (사업장 운영 관련 민원·소송)			
		Complaints and litigation relating to products and services (제품·서비스 관련 민원·소송)			
		Product safety/verification (제품 안전성 검증)			
		Supply chain (공급망 사회적 리스크 관리)			
		Labor practices (인사제도, 근로계약, 이직률, 근로시간)			
		Harassment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절차)			
G	8. Governance risks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이사회·감사·사외이사 등 지배구조)			